

경운대학교 건설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교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및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는 건설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위원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교구성원 및 사회적 약자의 건축시설물 이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한다.

1. 신축건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건물 리모델링 및 수선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물의 보완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중요사항

제8조(자료요청) 위원회는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건축 및 수선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